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4. 4. 17 선고 2023가단5514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피 고 B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4. 3. 20.

판 결 선 고 2024. 4. 17.

주 문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D 사이에 2019. 11. 21.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D에게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와 2019. 12. 10. 접수 제434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5563호로 양수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 28. D에게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소외 회사로부터 위 양수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는 2020. 9. 24. 위 양수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소1732389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9. 24. ‘D는 원고에게 16,341,708원과 그 중 8,950,90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0. 10.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D의 아버지인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9. 11. 21.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법정상속분 3/13)와 자녀들인 G, D, H, I, C(법정상속분 각 2/13)이 있다.

라. 피고는 2019. 12. 10. 망인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11. 21.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상속분할협의’라고 한다)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D는 이 사건 상속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D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이 사건 상속분할협의 이전에 이미 발생한 채권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 여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들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D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 지분(2/13)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분할협의 계약을 체결한 것은 자신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거나 이미 발생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어떤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당시 자신이 선의였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수익자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D가 채무초과상태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달리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추정을 뒤집고 수익자인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속협의분할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9. 11. 21. 체결된 이 사건 상속협의분할을 취소하고,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호재

별지